

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

「축산법 시행규칙」의 일부개정령안

1. 개정 사유

일몰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관련 규정을 재검토하고 그 심사 결과에 따라 「축산법 시행규칙」을 개정하려는 것임

2. 주요 내용

「축산법 시행규칙」에서 가축 검정기관 지정 시 인력기준 요건에서 자격기준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등 일몰도래 규제를 정비하려는 것임

3. 참고 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국무조정실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 예정

3) 행정규제 : 규제 신설·강화 등 없음

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「축산법 시행규칙」의 일부개정령안

제1조(「축산법 시행규칙」의 개정)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1호 가목 중 “축산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”을 “축산기사나 축산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축산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가축 육종·유전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검정기관 지정에 관한 적용례) 「축산법 시행규칙」 제10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검정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축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0조(검정기관의 지정)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7조에 따라 가축의 검정기관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검정 대상 가축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인력 및 시설·장비를 확보한 축산 관련 기관 및 단체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.	제10조(검정기관의 지정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다음 각 목의 인력	1. -----
가. 가축육종·유전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축산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가축육종·유전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<u>축산기사 이상</u> 의 <u>자격을 취득한 사람</u> 1명 이상	가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축산기사나 축산기술사</u> <u>자격을 취득한 사람</u> <u>또는 축산산업기사</u> <u>자격을 취득한 후 가축 육종·유전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</u> -----
나. (생략)	나. (현행과 같음)
2. (생략)	2. (현행과 같음)